

[별표 3]

공시 신청 제출서류(제5조제1항 관련)

제출서류	토양개량·작물생육		병해충관리		비 고
	공시 (효능·효과 표시)	공시 (효능·효과 표시)	공시 (효능·효과 표시)	공시 (효능·효과 표시)	
1.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가. 원료의 특성 나. 제조조성비 다. 물질의 유래 (구매경로 포함)	○	○	○	○	1. 미생물제제는 배지 조성 자료 포함 2. 수입 원료는 규격서(spec) 및 제조공정의 원본 및 번역본 포함
2.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가. 주성분 ① 주성분 검사 성적서 및 분석방법	○	○	○	○	1. 자재의 주성분에 대한 정성·정량 분석 성적서 2. 유기질비료: 원료별 주성분 검사성적서 추가 3.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자재의 경우 검사항목 -원료 : 키토산 점도(cps), 키토산 순도(mg/g), 키토올리고당 순도(mg/g) -제품 : 키토산(총 글루코사민 기준) 및 키토올리고당의 함유량(mg/g) 4. 목초액을 자재로 사용한 경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임업진흥원의 시험성적서 및 품질인증서
② 미생물 동정	○	○	○	○	1. 미생물을 사용한 자재

<p>검사성적서 -속명·종명, 균 수(CFU/g, ml)</p>					<p>에 한함(멸균된 추출물 또는 대사산물 및 퇴비에 첨가한 미생물의 경우 면 제)</p>
<p>③천적 동정(同 定) 및 이종 (異種) 혼 입 검사성적서</p>	○	○	○	○	<p>1. 천적에 한함</p>
<p>④주성분에 대한 보증성분량</p>		○		○	
<p>나. 유해성분</p>					
<p>① 유 해 중 급 속 검사성적서</p>	○	○			<p>1.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크롬, 구리, 니켈, 아연</p> <p>2.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 한 자재의 경우 크롬, 납, 카드뮴, 수은, 비소, 니켈 검사성적서</p>
<p>②병원성미생물 검사성적서</p>	○	○	○	○	<p>1.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부원료로 사용하였 거나 미생물 발효 공정을 거친 자재는 병원성대장 균, 살모넬라, 황색포도 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 사이토제네스, 및 바실러 스 세레우스 검사성적서 (멸균된 추출물 또는 대 사산물을 포함한다)</p> <p>2. 퇴비에 한하여 병원성 대장균 및 살모넬라 검사 성적서</p> <p>3.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 한 자재에 한하여 대장 균(<i>Escherichia coli</i>) 검 사성적서</p>

③항생물질 검사 성적서	○	○			1. 가축분, 혈분 등 가축의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자재에 한하여 테트라사이클린계, 베타락탐계, 설파계, 마크로라이드계 및 아미노글리코시드계 검사성적서
④잔류농약 검사 성적서	○	○	○	○	1. 유기합성농약 성분 검사 성적서
⑤리친(Ricin) 검사 성적서	△	△			1. 아주까리 유박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한함
3. 식물에 대한 시험 성적서 가. 유식물 비료 피해(肥害) 시험 성적서 나. 비료효과(肥 效)·비료피해 (肥害) 시험성 적서 다. 유식물 농약 피해(藥害) 시험 성적서 라. 농약효과(藥 效)·농약피해 (藥害) 시험성 적서	○	○ ○		○ ○	
4. 독성에 대한 시험 성적서 가. 인축독성(급 성경구·급성경 피, 피부자극, 안점막자극) 시험 성적서 나. 환경독성(급 성어류, 물벼 룩류 급성유영	△ △	△ △	○ ○	○ ○	1. 물벼룩류급성유영저해 시험과 꿀벌 급성접촉 독성시험(꿀벌영향 포함)은 공시기준의 검사대상에 한함 2. <삭제> 2.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자재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17에 따른 위해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해당 독

저해, 꿀벌 급성접촉(꿀벌영향 포함) 시험 성적서					성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5.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원료 및 제품) 가. 제조공정 나. 품질관리	○ ○	○ ○	○ ○	○ ○	1. 퇴비의 경우에는 부숙 온도 및 뒤집기 자료 포함 2. 해당 자재에 대한 품질 관리 항목 및 방법
6. 포장지 표기사항에 관한 자료	○	○	○	○	
7. 시료 500g(ml)(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ml))	○	○	○	○	1. 포장된 제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과 제출 시료량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8. 그 밖의 제출 서류 가. 농약 또는 비료 등록에 관한 증빙서류 나. 책임보험가입증서 다. 사업자등록증 라. 외국의 자재인증 등 관련 서류 마. 원료공급증명서 바.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농약 또는 비료로 등록된 자재에만 해당 2.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 3. 수입완제품 또는 수입완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투입원료별 각각의 자료 5. 공시 자재를 효능·효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주(注) ○ : 신청시 제출. △ : 필요시 제출					